

병원적출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일소각로에서 소각허용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주식회사 락정건설 대표이사 이지
욱)이 서울특별시장과 환경부장관, 보건복지
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1의 서울중앙병원에 일반폐기물처리시
설(소각로 시간당 400킬로그램)을 설치하여
1994. 9. 3. 서울특별시로부터 설치승인을 받
은 승인조건 중에서 “병원적출물은 소각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취소하여 하나의
소각로에서 일반폐기물과 병원적출물을 동시
에 소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원인사실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
1994. 8. 12. 일반폐기물소각로 설치승인서를
제출하여 1994. 9. 3. 병원적출물은 소각을 금
지한다는 조항을 부가한 조건부설치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1의 서
울중앙병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과 적출물
소각에 관한 질의를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1994. 9. 24. 일반폐기물과 적출물을 동시에 소
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원칙적으로 불
가능하며, 다만 병원적출물의 소각처리는 적
출물 등 처리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의 의견을 따려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또
한 서울중앙병원에서도 1994. 10. 1. 자로 보건
복지부에 적출물 등 소각에 관한 질의를 하
여, 1994. 11. 1. 일반폐기물과 적출물 등을 하
나의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회신받았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일반폐기물의 소각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병원적출
물의 소각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적출물등 처
리규칙의 규정에 의거하므로서 두개의 법이
규정하는 구비요건을 모두 갖춘 소각로를 설
치한 경우에는 병원적출물과 일반폐기물들을
동시에 소각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별도의 경비를 들여 또다른
소각로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적출물소각금지조건
의 취소요청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적출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각각 폐기물관리법과 의
료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
게 제작하여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설
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시설은 서울중
앙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지, 폐목재, 식물잔재
물 등 일반폐기물만 소각처리하겠다고 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한 것이며, 이 시
설에서 적출물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할 경우
에는 의료법에 의해 해당기관에 법적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
항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동 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등은 적용
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출물소각시설(처리능
력 25Kg이상/시간)의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신청인에게 환경부장관의 질의회신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과 적출물 소각시설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하고 있으므로 동 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소각대 상물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방지시설을 갖춘 일정 능력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었다면 하나의 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과 적출물을 등을 혼합하여 소각함이 바람직하며, 이의 관리는 소각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 사후측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 및 처리결과

병원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적출물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범주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량의 환자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적출물로 인한 병원균의 2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보건의 예방을 위하여 일반폐기물과 적출물은 상호분리하여 관리 및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반폐기물과 적출물을 별도의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일반폐기물에 대한 적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으로 환경부소관업무로, 적출물에 대한 적용은 의료법에 의한 규정으로 보건복지부소관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41조에 그 권

한 중에서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17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 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적출물)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적출물등처리규칙 제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적출물 등에서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에 한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소각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의료기관 및 적출물처리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각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신설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령 및 소관업무를 구분하여 적용관리하므로서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출물등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일반폐기물과 적출물 등을 동시에 소각할 수 있도록 요구한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결하였다.



옥삼복 / 공학박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